제36권: 2007. 1. 15.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1. 문제 제기 ····· 1
2.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 1
3.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 7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 10
5. 농업법인의 제도 개선방안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수석** 부연구위원 02-3299-4284 soosuk@krei.re.kr
박석두 연구위원 02-3299-4239 sdpark@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문제 제기

DDA와 FTA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에 있다. 농업법인경영체는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다. 즉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한 현재 5천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법인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2.1. 농업법인 제도의 내용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설립하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이다. 원칙적으로 협업경영은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이익과 법인 구성원의 이익은 개념상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 법인의 설립 조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동일하다. 다만, 법인의 발기인 또는 구성원 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사는 발기인 2~50인과 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는 발기인 3인 이상으로 설립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총출자액,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액 모두 제한이 없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자본금이 정해져 있는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천만 원 이상,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주식회사는 5천만 원 이상이다.

□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농업회사법인 구성원의 책임은 상법상의 회사 유형별 책임과 동일한 것이 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인 1표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 1구좌당 1표(합명·합자·유한회사), 주식 1주당 1표(주식회사)이다.

□ 농지소유 자격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업무집행권 소유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업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에 정하는 사업이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으로서 영농에 필요한 자

표 1.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좌동
발기인수와 출자자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유한책임) 주식회사: 3인 이상(유한책임)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 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3/4 이하
의 결 권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 또는 1주당 1표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가능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 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가입 가능 생산자단체	농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좌 동

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종류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2.2.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내용

1990년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개별 농가와 대등하게 지원하였으나, 1994년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부터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 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7년 1월부터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준을 출자액 1억 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실적 평가 등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실적 우수 법인에 대해서만 연리 5%의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사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요건과 사업별 지원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의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그리고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다<표 2>.

표 2.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구 분		세제지원 내용
국 세	법인세	①농업소득: 면제 ②농업외소득: 면제와 감면 -영농조합법인: 면제(출자조합원당 연 1,2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 50% 감면(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03.12.31 이전 설립은 5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 면제 ②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제(2010년 말까지 농업 법인에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부 가 가치세	①영세율 적용: 비료, 농약,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2008.12.31까지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면제-'07.6.30까지 공급분 75%감면-'07.7.1~'07.12.31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①창업 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②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 중)
	법 인 등록세	법인설립 등기시: 면제(법 266조 제7항, 2009.12.31까지, 개정 중)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 중)
	재산세	①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50% 감면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 중)
조합원 감면	양 도 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배 당 소득세	①농업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 ②농외소득의 배당소득세: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2.3.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농업법인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적용받는 협업체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받는 기업체로 설계되었지만,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에 미약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에서 두 조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복합사업이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 뿐 아니라 농산물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를 대상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한다 하더라도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이 유통분야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를 갖게 된다. 농업법인이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이 유통 및 가공관련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한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넷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관이 없다. 현재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농업법인들의 조직체인 협회조차 해체된 상태에 있어 자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운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중 상당부분이 특정시점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시한부 규정에 놓여 있다. 농업법인 관련 조세 중에서 국세에 속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상의 우대조치가 시한부로 주어져 있다.

3.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 농업법인은 2003년 이후 감소 추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망라한 농업법인의 총수는 2000년의 5,208개에서 2002년 5,598개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5,432개, 2005년 5,260개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표 3>. 전체적으로 농업법인의 수는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내용상으로는 출자자개별운영의 농업법인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출자자개별운영은 법인의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농가 단위의 개별 경영과 다르지 않으므로 농업법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 유형의 법인 감소는 긍정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표 3. 농업법인의 운영 형태별 추이

단위: 개, %

구 분	기준 연도	운영 중인 사업체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개별운영[1]
합 계	2000	5,208 (100.0)	2,833 (54.4)	533 (10.2)	1,842 (35.4)
	2001	5,167 (100.0)	2,589 (50.1)	557 (10.8)	2,021 (39.1)
	2002	5,598 (100.0)	2,826 (50.5)	593 (10.6)	2,179 (38.9)
	2003	5,432 (100.0)	2,837 (52.2)	605 (11.1)	1,990 (36.6)
	2004	5,492 (100.0)	2,828 (51.5)	702 (12.8)	1,962 (35.7)
	2005	5,260 (100.0)	2,841 (54.0)	708 (13.5)	1,711 (32.5)
영농조합법인	2000	3,852 (100.0)	2,014 (52.3)	414 (10.7)	1,424 (37.0)
	2001	3,919 (100.0)	1,908 (48.7)	440 (11.2)	1,571 (40.1)
	2002	4,315 (100.0)	2,177 (50.5)	476 (11.0)	1,662 (38.5)
	2003	4,274 (100.0)	2,269 (53.1)	477 (11.2)	1,528 (35.8)
	2004	4,425 (100.0)	2,337 (52.8)	560 (12.7)	1,528 (34.5)
	2005	4,293 (100.0)	2,396 (55.8)	562 (13.1)	1,335 (31.1)
농업회사법인	2000	1,356 (100.0)	819 (60.4)	119 (8.8)	418 (30.8)
	2001	1,248 (100.0)	681 (54.6)	117 (9.4)	450 (36.1)
	2002	1,283 (100.0)	649 (50.6)	117 (9.1)	517 (40.3)
	2003	1,158 (100.0)	568 (49.1)	128 (11.1)	462 (39.9)
	2004	1,067 (100.0)	491 (46.0)	142 (13.3)	434 (40.7)
	2005	967 (100.0)	445 (46.0)	146 (15.1)	376 (38.9)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가공·유통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증가

2000~2005년에 농업법인의 업종별 업체 수 비율의 동향을 보면, 농업생산업의 유지·정체, 가공판매의 완만한 증가 추세, 유통판매의 감소 후 증가 추세, 농업서비스업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요약할 수 있다<표 4>. 농업생산업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의 비율은 2000년의 42.3%에서 2003년 45.9, 2005년 43.5%로 증감하면서 정체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표 4. 농업법인사업체의 업종별 추이

단위: 개, %

구 분	기준연도	합 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 업 서비스	기타
합 계	2000	3,366	1,425(42.3)	336(10.0)	538(16.0)	795(23.6)	272(8.1)
	2001	3,146	1,411(44.9)	337(10.7)	339(10.8)	633(20.1)	426(13.5)
	2002	3,419	1,508(44.1)	373(10.9)	435(12.7)	561(16.4)	542(15.9)
	2003	3,442	1,580(45.9)	433(12.6)	463(13.5)	450(13.1)	516(15.0)
	2004	3,530	1,609(45.6)	468(13.3)	507(14.4)	355(10.1)	591(16.7)
	2005	3,549	1,545(43.5)	498(14.0)	540(15.2)	326(9.2)	640(18.0)
영농조합법인	2000	2,428	1,150(47.4)	314(12.9)	524(21.6)	190(7.8)	250(10.3)
	2001	2,348	1,121(47.7)	307(13.1)	325(13.8)	188(8.0)	407(17.3)
	2002	2,653	1,224(46.1)	332(12.5)	409(15.4)	186(7.0)	502(18.9)
	2003	2,746	1,285(46.8)	381(13.9)	435(15.8)	172(6.3)	473(17.2)
	2004	2,897	1,320(45.6)	417(14.4)	478(16.5)	147(5.1)	535(18.5)
	2005	2,958	1,290(43.6)	433(14.6)	500(16.9)	140(4.7)	595(20.1)
농업회사법인	2000	938	275(29.3)	22(2.3)	14(1.5)	605(64.5)	22(2.3)
	2001	798	290(36.3)	30(3.8)	14(1.8)	445(55.8)	19(2.4)
	2002	766	284(37.1)	41(5.4)	26(3.4)	375(49.0)	40(5.2)
	2003	696	295(42.4)	52(7.5)	28(4.0)	278(39.9)	43(6.2)
	2004	633	289(45.7)	51(8.1)	29(4.6)	208(32.9)	56(8.8)
	2005	591	255(43.1)	65(11.0)	40(6.8)	186(31.5)	45(7.6)

주: 출자자개별운영을 제외한 농업법인의 조사결과임.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부기기장 미흡과 경영의 투명성 부족

2005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하는 농업법인은 2,180개소로서 전체 법인의 61.5%였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결산법인의 비중이 64.5%, 농업회사법인에서 46.7%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6.7%(493개)가 간이기장, 18.8%(555개)가 미기장이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2.6%(133개)가 간이기장, 30.7%(181개)가 미기장이었다.

□ 낮은 경영성과로 법인의 1/3이 적자경영

2005년 결산법인의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7.0%였고, 법인당 자산이 13억 5,200만 원, 부채가 8억 8,100만 원, 자본이 4억 7,100만 원이었다. 법인당 당기순이익은 4,800만 원이나, 결손법인을 제외하면 8,7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다<표 5>.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법인이 33.7%로 가장 높고, 영업이익 규모별로는 적자를 포함한 1억 원 미만 법인이 86.1%를 차지했다<표 6>.

표 5. 법인당 경영 성과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기준 년도	결산법인수		매출액	매출 원가	매 출 총이익	영업 이익	경상 이익	당기순이익	
		계	결손 법인						결손 포함	결손 제외
합 계	2003	1,914	603	1,329	1,169	160	17	16	14	53
	2004	2,130	596	1,529	1,325	204	47	44	43	80
	2005	2,180	573	1,709	1,485	223	42	50	48	87
영농조합 법 인	2003	1,650	496	1,282	1,129	153	20	18	17	49
	2004	1,853	491	1,434	1,246	188	43	40	42	74
	2005	1,905	487	1,527	1,329	197	34	41	41	72
농업회사 법 인	2003	264	107	1,626	1,418	207	2	5	-	83
	2004	277	105	2,162	1,854	308	70	67	50	128
	2005	275	86	2,971	2,567	403	102	110	102	203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6.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단위: 개소, %

구 분	기준 년도	결 산 법인수	매 출 액				영 업 이 익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이상	적자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원 이상
합 계	2003	1,914	542	543	269	560	699	1,006	196	13
	2004	2,130	585	620	271	654	742	1,101	239	48
	2005	2,180	560	595	291	734	786	1,091	259	44
	구성비	100.0	25.7	27.3	13.3	33.7	36.1	50.0	11.9	2.0
영농조합 법 인	2003	1,650	440	474	245	491	579	888	173	10
	2004	1,853	485	549	250	569	626	982	209	36
	2005	1,905	471	529	270	635	682	972	221	30
	구성비	100.0	24.7	27.8	14.2	33.3	35.8	51.0	11.6	1.6
농업회사 법 인	2003	264	102	69	24	69	120	118	23	3
	2004	277	100	71	21	85	116	119	30	12
	2005	275	89	66	21	99	104	119	38	14
	구성비	100.0	32.4	24.0	7.6	36.0	37.8	43.3	13.8	5.1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4.1. 독일: 유한책임의 대규모 법인경영

독일에서는 농업법인경영체를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농업경영체가 상법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혹은 협동조합법상의 등록조합으로 등록하면 농업법인경영체가 된다. 독일에서 법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이다. 경영체의 책임이 유한일 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한책임을 갖는 경영체는 상법상의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되지 못한다. 독일에서는 무한책임을 갖는 민법상의 회사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을 인적회사로 분류해 법인과 구별하고 있다.

독일에서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즉 농업생산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된다.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활동의 비중이다.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 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 상의 농림업 개념이다.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영농활동 희망자와 현재의 종사자에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영농활동 희망자는 자신의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영농조직 형태를 찾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형태가 메뉴로 기능하게 된다.

독일의 농업법인경영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특성은 갖는다. 즉 영농조합은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등록조합(법인)이며,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아서 농업협동조합인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으로 분류된다.

4.2. 프랑스: 가족농의 법인경영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민사회사법(droit des sociétés civiles)상의 회사법인이다. 농업경영체가 상업회사법상의 회사로 설립되면 일반 회사와 같은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법인으로 설립된 농업경영체를 의미하고, 농업법인제도는 이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회사법을 통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①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②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③ 농업경영민사회사(SCEA) 등이 있다.

여기서 GAEC은 가족농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법인으로서 고용노동력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공동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GAEC에 지분을 출자한 각 구성원들은 농업경영주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GAEC의 경영과 경영성과에 관여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출자지분의 두 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프랑스에서 GAEC의 구성원은 개인경영체의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ARL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는 GAEC이 축소돼 1인 참여자로 구성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EARL의 기본성격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와 동일한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보유지분에 비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지분 한도 내로 하고 있다.

4.3. 일본: 가족농의 보완적 형태에서 발전적 형태로 전환

일본의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과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일반농업법인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로서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법인이다. 농업생산법인제도는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데, 즉 ① 1993년 '신농정' 이전 단계, ② '신농정' 단계, ③ '신농정' 이후 단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는 신농정 단계이다. 1993년에 일본은 1961년의 「농업기본법」 이후 시행해온 '기본법농정'에서 이른바 '신농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농업법인제도도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신농정에서는 '농가'가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그에 필요한 농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표 7. 외국의 농업법인제도 비교

구 분	독일	프랑스	일본
농업법인의 성격	일반법인	특수법인	특수법인
법인의 지표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	유한책임/회사형태	회사 형태 여부
농업경영체 개념	농업생산 중심 경영체	농업생산 중심 경영체	농업경영/농외활동 구분
농업생산법인/ 일반농업법인 구분	없음	민사회사법상 법인/ 상업회사법상 법인 구분	있음
특징	기업농적, 협업농적 대규모 법인경영	가족농적 법인경영	대규모 법인경영에서 가족농의 법인화로 전환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제도의 변천 과정은 한마디로 농업법인의 도입취지가 당초 가족농업경영의 발전을 위한 협업경영의 조장에서 가족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농업법인은 가족농업경영의 보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부터 발전적 형태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5. 농업법인의 제도 개선방안

5.1.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

□ 농업법인의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 맡길 필요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의 경영상태를 심사·평가하여 법인운영을 상담·지도하고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밟게 하는 관리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법인의 관리기구가 없고, 이에 따라 개별 농업법인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는 일차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도·상담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의무와 함께 관리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다시 말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게 관내 농업법인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활동 중인 농업법인 중 정책자금의 우선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법인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게 하는 권한을 가지게 한다.

□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법인 정비

법인등록만 되어있고 사실상 법인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회계신고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기구가 법인통계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관리기구는 유명무실한 법인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자발적 해산을 권고한다. 그 다음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 강제해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 법인은 관리기구가 직권으로 해산한다.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리기구의 직권해산이 어려운 법인은 부실한 법인의 청산과 같은 범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법인의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고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기구가 일차적으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이 법인은 부실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관리기구는 부실한 법인에 대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을 명할 수 있다. 청산에서 법인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으면, 법인의 성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청산이 끝난 법인은 해산하도록 한다.

□ 세제상의 지원 강화 및 지원제도 정비

현재 농업소득세는 2009년까지 면제되어 있으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06년 12월말까지 면제 및 감면되게 되어있다. 여기서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및 감면 시한은 농업소득세와 같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업회사법인에도 농업소득 배당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소득의 배당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면세하고, 농업외 소득의 배당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2006년 12월말로 도래되는 농업법인의 법인세도 일차적으로 2009년 말까지로 감면시한을 연장하도록 한다.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내용을 검토하여 조세상의 우대를 계속할 것인지, 우대를 철회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우대를 계속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확정적 형태로 세제를 제도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5%의 저율 부가가치세를 시한부가 아닌 형태로 확정한다. 이는 농업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1]

[1]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에 투입되는 재화와 산출되는 생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 세율인 16% 대신에 9%의 저율로 부과하고 있다.

□ 농업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관계 개선

농업법인과 농업협동조합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주로 유통 및 가공 중심의 농업법인이다. 이런 농업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법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농협의 경제사업과 중복되어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양자 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상호경쟁관계를 탈피하여 농업법인의 경영마인드와 농협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갖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농업법인과 농협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농업법인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준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있으나, 필요시 이러한 준회원 규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이 조합공동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협과 농업법인의 개별적 유통으로 인한 경쟁관계하에서도 양자 간의 합의와 업무분담으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 농업법인의 조직변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영농현장의 농업법인들 중에는 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들이 다수 있다. 즉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내에서도 합명 내지 합자회사가 유한회사 등으로 법적 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인의 조직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회사법인의 모법인 상법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에 상호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밖의 경우는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 회사의 유형들 간의 조직변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합명 또는 합자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농업법인의 조직변경은 농업법인을 직접 규율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농업법인의 법적 형태 변경에 대한 내용은 운영 중인 법인의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완전한 청산 및 해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적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출자자본이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수 있게 한다.

5.2. 농업법인 제도 개편

5.2.1.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

농업법인의 발전방향은 농업생산법인과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포함하는) 농업서비스법인의 발전방향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먼저 농업생산법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 하나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적, 협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농가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가족농 법인제도(가칭 "유한영농법인")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업서비스법인의 발전방향은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할 수 있게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현재 농업법인에게 복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기능 중에서 농업생산 기능에 대해 제한을 두도록 한다.

농업법인 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은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경영체가 되고,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 농업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자유롭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관련 회사가 되도록 한다.

표 8. 새로운 농업법인제도(안)

일반/특수법인	법인의 유형	제도적 형태	특성
농업법인 (특수법인)	농업생산법인	영농조합법인	기업농적 대규모 생산법인
		"유한영농법인"	가족농적 소규모 생산법인
	농업서비스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의 유통·가공법인

5.2.2. 농업법인제도 개편방안

□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의는 농업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활동의 비중이 농업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경영체 전체활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농업활동의 크기로 농업경영체를 인정하는 기준은 농업생산활동의 비중이 적어도 경영체 총매출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 가족농의 "유한영농법인"제도 도입

가족농의 법인경영은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경영 및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으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법인경영을 가능케 하여 농업후계자를 승계농 형태로 육성할 수 있다. 요컨대 가족농인 농가의 대안이 되는 농업경영체를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업법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도입을 찬성하였다.

가칭 "유한영농법인"은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농업인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상한을 최대 10인으로 한다. 출자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로서 회사의 출자자본금을 최소 1,000만원으로 한다. "유한영농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차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유한영농법인"을 구성하여 부모가 출자액을 법인에 속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승계를 용이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자(父子) 간의 "유한영농법인"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자식이 단독으로 법인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2인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업생산법인의 성격이 명확하도록 농업법인제도 개편

기존의 법인제도 개편은 영농조합법인을 농업생산법인으로 특화하고 농

업회사법인을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농업생산법인은 엄밀한 의미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생산이 주된 경영활동이 되고, 유통 및 가공 활동은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이 주된 사업이 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한다. 반면에 농업생산이 중심이 되는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유한영농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이 없는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되고,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법인이 된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고, 따라서 농업생산을 할 수 없다. 반면에 출자와 경영에서 농업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비농업인만으로 출자와 경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 육성

농업생산과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생산과 서비스 영역 간의 수직통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업법인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활동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화에 의한 수직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농업법인 내에서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면,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 간의 수직통합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 간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9. 새로운 제도에 의한 농업법인의 개편 유형

기존 법인 형태	조건	개편 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활동 중심	· 영농조합법인 혹은 "유한영농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없음	· 농업회사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병행	·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법인(유한영농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 농업회사법인 · 구성원의 개별 생산으로 전환